

#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

제정 2009. 12. 03. 규칙 제72호

개정 2012. 07. 24. 규칙 제92호

전문개정 2015. 06. 08. 규칙 제122호

개정 2022. 04. 11. 규칙 제20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인천아트플랫폼(이하 “아트플랫폼”이라 한다)의 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관”이라 함은 전시·공연·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,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대관자”라 함은 이 규칙을 인정하고 아트플랫폼의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대관료”라 함은 [별표 제 1호]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.

**제3조(대관의 종류)**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,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기대관은 아트플랫폼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받아 승인·확정한다.
2.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아트플랫폼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·확정한다.

②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대관에 관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라 한다)가 별도로 정한다.

**제4조(대관범위)** ① 아트플랫폼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시설 : 전시장, 공연장, 다목적실, 옥외공간 및 기타부속 시설
2. 부대설비 :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

**제5조(대관신청)** ① 제4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아트플랫폼이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 [별지 제1호서식]을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아트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신청기간은 대관신청 시작일 14일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한다.  
③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대관변경신청서 [별지 제2호 서식]을 아트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대관심의위원회)** ① 아트플랫폼은 제4조 제1호 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3조 제1항 2호의 수시대관은 인천문화재단 아트플랫폼 소관 본부장이 이를 심의한 후 허가한다.  
③ 제1항의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% 이상으로 하며, 구성 및 운영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대관허가)** ① 아트플랫폼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기일 안에 이를 심의해 대관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 
② 아트플랫폼은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8조(대관시간)** ① 아트플랫폼의 대관시간은 다음과 같다

1. 전시장, 다목적실, 옥외공간 및 기타부속 시설 :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다.
2. 공연장
  - 가. 오전 :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한다.
  - 나. 오후 :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  - 다. 야간 :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플랫폼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 
③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9조(대관기간변경)** 대표이사는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0조(대관료)** ① 대관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아트플랫폼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
2. 인천광역시 및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등
2. 기타 대표이사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

**제11조(대관료의 반환)**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1.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
2. 국가적 행사, 인천광역시 또는 아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
3.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대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은 경우 :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 반환
4.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은 경우 : 납부한 대관료의 90% 반환
5. 사용예정일 당일에 대관 취소 :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음

제12조(냉난방비 징수) 대관시설의 냉난비는 별표에 의하여 별도 징수한다.

제13조(입장권의 발행) 대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트플랫폼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대관신청제한 및 자격정지) ① 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아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아트플랫폼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3.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경우
4.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
5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, 전시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
6. <삭제 2022. 04. 11.>

7.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8. 기타 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대관자 손해에 대해 아트플랫폼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대관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
2. 국가적 행사, 인천광역시 또는 아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
3. 이 규칙이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4. 아트플랫폼의 승인 없이 과도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
5. 허가조건 및 관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6. 대관결정 당시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. 다만 행사 30일 전까지 내용변경 신청을 하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7.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③ 대관허가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아트플랫폼은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
2. 대관허가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
3. 아트플랫폼에 미수금이 발생하게 한 경우
4.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5.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
6.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7. 대관자가 아트플랫폼의 승인 없이 공연 및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

**제15조(대관자의 의무)**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이 규칙이 명시한 내용 및 아트플랫폼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제5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④ 대관자는 대관행사 기간 중 입장인원을 일자별로 아트플랫폼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행사의 준비·진행·철수시 발생한 포장지, 화환,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.

⑥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이 정한 기일 내에 행사 전반에 관련한 세부협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대관자의 안전관리)** ① 대관자가 공연, 행사,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

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아트플랫폼(방화관리자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대관자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, 아트플랫폼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대관자가 아트플랫폼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대용량 전기기기(전용회로 구성에 필요한 설비 일체)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 22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아트플랫폼 전기안전관리자와 시설관리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

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트플랫폼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**제17조(대관자의 설비)**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아트플랫폼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. 또한 철거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**제18조(입장제한)** 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3.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기타 대표이사가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19조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** ①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아트플랫폼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② 아트플랫폼은 대관기간 중(연습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)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④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이 제3자로부터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아트플랫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대관자는 아트플랫폼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아트플랫폼이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.

**제20조(광고, 홍보물의 협의)** ① 대관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시 아트플랫폼의 기본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현수막 부착, 포스터 게시,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트플랫폼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방송 및 판촉, 부대행사 등)** ① 아트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전시, 공연 등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트플랫폼과 사전에 협의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부대행사(세미나, 퍼포먼스, 판촉, 사인회 등)는 대관행사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,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아트플랫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대관자는 대관 장소에서 전시작품, 행사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. 다만, 대관 신청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트플랫폼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운영세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조(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아트플랫폼 내규 및 재단의 규정·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.

제3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

##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임대료(제10조 제1항, 제12조 관련)

구 분	단위/ 기준	임대료 (원)	비 고	냉난방비 부과 기간 (1월, 2월, 6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
공 연 장	오전	30,000	○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, 공휴일은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○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이용 시에는 당해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○ 당일 공연 또는 행사 후 철거를 위한 23시 이후 이용 시에는 야간 임대료의 50퍼센트로 함 ○ 1시간 이상 초과 이용시 다음회 임대료의 전액을 가산함. - 30분 미만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20퍼센트 가산 - 30~60분 초과 이용시 당해 임대료의 50센트 가산 ○ 기본설비(조명, 음향장치) 지원	대관시간 기준 (시간당 3,000원)
	오후	50,000		
	야간	70,000		
다목적실	시간당	5,000	○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	회의시간 기준 (시간당 1,500원)
전시장1	09~22시	100,000	○ 해당면적 : 667㎡(일부사용 불가)	9~22시 기준 (30,000원)
전시장2	09~22시	18,000	○ 해당면적 : 120㎡(일부사용 불가)	9~22시 기준 (12,000원)

※ 부가가치세 별도

※ 기준시간

- 오전 : 09:00 ~ 13:00
- 오후 : 13:00 ~ 18:00
- 야간 : 18:00 ~ 22:00
- 1일 : 09:00 ~ 18:00

※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







[별지 제4호 서식]

## 인천아트플랫폼 대관허가/불허가 통보서

신청인	단체/기관명		
	주소(소재지)		
허가결과		불허가사유	
행사명			
대관장소			
대관기간			
대관료			
납부기한			
입금계좌			
스텝회의			
<p>[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대관규칙] 제 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첨부 : 허가조건 1부</p> <p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>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</p>			

